

특 허 법 원

제 3 1 부

판 결

사 건 2023나11283 상표권침해금지 등
원고, 피항소인 A (A)

대표자 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최성준)

변호사 조태연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담당변호사 김철식, 김세라)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

판 결 선 고 2024. 10.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별지 2, 3 기재 각 가방 및 지갑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금지를 명한 부분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상표사용 금지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유 이 사건 상표들

1) 이 사건 상표 1(갑 제1호증의 1)(별지 1 '이 사건 상표들' 중 제1항 기재 상표와 같다)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4. 7. 1./ 1995. 12. 26./ 제3302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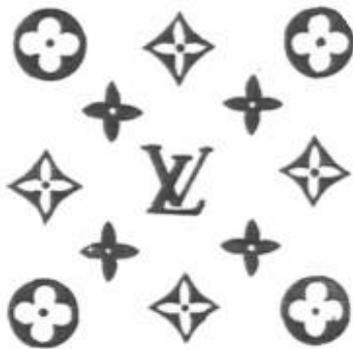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제18류 솔더백, 핸드백, 비귀금속제 지갑 등

2) 이 사건 상표 2(갑 제1호증의 2)(별지 1 '이 사건 상표들' 중 제2항 기재 상표와 같다)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83. 8. 5./ 1985. 1. 17./ 제109060호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제25류 지갑, 핸드백 등

나. 이 사건 상표들의 저명성

원고는 이 사건 상표 1, 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가방들(이하 통틀어 '원고 가방'이라 한다)과 지갑들(이하 통틀어 '원고 지갑'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원고 가방과 원고 지갑 제품들의 일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상표들의 표장은 1896년경 창안된 이래 원고의 가방, 지갑 등 상품에 사용되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소재 원고 관련 회사인 A코리아 유한 회사의 2020년 매출액은 약 1조 467억 원에 이른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리폼

1)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소유자들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상표들이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별지 2, 3의 '리폼 전 제품 형태' 기재 각 가방(이하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건네받아 그 원단, 금속 부품 등을 원자재로 이용하여 개수,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이 다른 별지 2, 3의 '리폼 후 제품 형태' 기재 각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여(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통틀어 '이 사건 리폼'이라고 하고, 별지 2, 3의 '리폼 후 제품 형태' 기재 각 가방과 지갑을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이라고 한다) 주문자에게 인도하였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별지 2 순번 1, 2: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리폼하여 다른 형태의 가방을 만든 사례>

	리폼 전 제품 형태	리폼 후 제품 형태
1		
2		

<별지 3 순번 1, 2: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리폼하여 지갑을 만든 사례>

	리폼 전 제품 형태	리폼 후 제품 형태
1		
2		

2)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별지 2 순번 13: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리폼하여 다른 형태의 가방을 만드는 과정>

소비자로부터 중고 가방 제공받음	중고 가방을 분해하여 원단을 재단	원단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방 제작
		

<별지 3 순번 1: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리폼하여 지갑을 만드는 과정>

소비자로부터 중고 가방 제공받음	중고 가방을 분해하여 원단을 재단	원단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갑 제작
		

3)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별지 4, 5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다른 원고 가방 및 원고 지갑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별지 2 순번 2: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리폼하여 다른 원고 가방과 유사한 형태의 가방을 만든 사례>

리폼 전 제품	리폼 후 제품	원고 가방
		

<별지 3 순번 2: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리폼하여 다른 원고 지갑과 유사한 형태의 지갑을 만든 사례>

리폼 전 제품	리폼 후 제품	원고 지갑
		

라.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한 법령은 별지 6의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7, 29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 상표권 침해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이 사건 리폼을 하여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한 새로운 가방 및 지갑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리폼주문자에게 인도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말하는 상품의 인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행위는 상표법 제89조 위반 및 제108조 제1항 소정의 행위로서 이 사건 상표들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별지 2의 1, 3 내지 16, 18 내지 23번의 각 리폼 후 제품, 별지 2의 24번의 리폼 후 제품 3개 중 오른쪽 1개 제품, 별지 3의 각 리폼 후 제품은 이 사건 상표 1의 상표권 침해, 별지 2의 2, 17번의 각 리폼 후 제품, 별지 2의 24번의 리폼 후 제품 3개 중 왼쪽으로부터 2개 제품은 이 사건 상표 2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이 사건 상표들은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제작·판매함에 따라 이 사건 상표들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상표들에 대한 각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제조하지 않을 것과 ②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상표법 제110조 제6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합계 30,000,000원(=이 사건 상표 1 침해 손해액 27,000,000원 + 이 사건 상표 2 침해 손해액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원인(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 (인용)

가. 인정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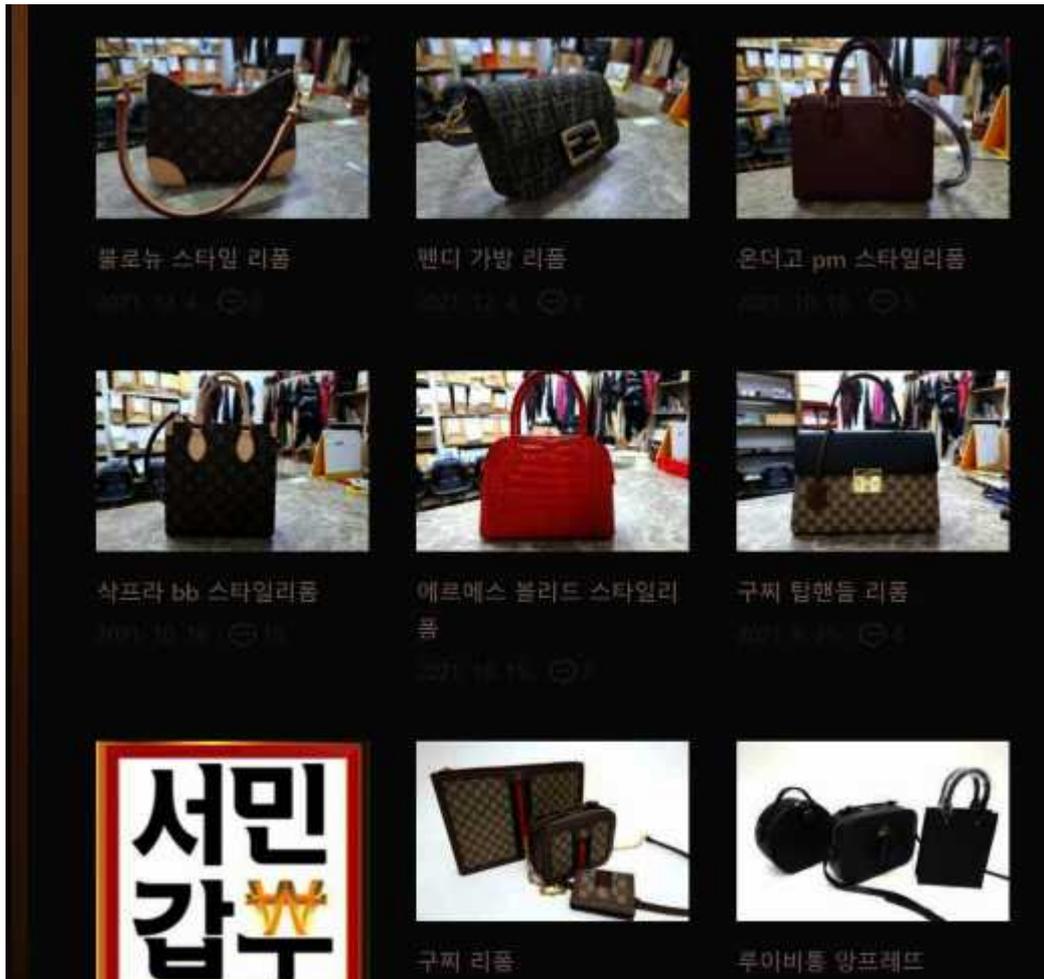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0, 11, 21, 22,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이 사건 리폼 전 제품 등 중고 가방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가방을 해체한 다음 그 원단 등을 이용하여 크기, 용적, 형태, 모양, 기능 등이 다른 가방 또는 지갑들을 제작하는 이른바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피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D'의 홈페이지에 '블로뉴 스타일 리폼', '삭

프라 bb 스타일 리폼', 'A 앙프레뜨' 등 이 사건 상표들을 포함하여 원고 상표가 표시된 여러 리폼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갑 제11호증>



③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에 관하여 리폼계약을 체결하는 리폼주문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전시된 리폼 후 제품의 샘플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D'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리폼 후 제품의 사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폼 후 제품의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리폼 전 제품의 크기 등의 한도 내에서 제작이 가능한 디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는다.

<갑 제27호증의1 : 피고가 미리 제작하여 비치해 둔 리폼 제품 샘플>



④ 원고는 2021. 4. 2.경 제3자(이하 '원고측 주문자'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 가방을 리폼할 것을 주문하여 리폼비용 450,000원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리폼 후 제품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측 주문자는 피고에게, 자신이 제공한 중고 원고 가방을 원고가 현재 판매중인 '삭 플라'라는 상품으로 리폼할 것을 주문하였고, 피고는 그 주문대로 아래와 같이 리폼 후 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측 주문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에게 리폼 주문한 원고의 중고 가방



피고에 의해 리폼된 가방



㉔ 위 리폼 후 제품에는 아래와 같이 리폼 전 제품에는 없었던 원고의 로고



'LV'가 표시된 여러 부품들이 사용되었고, 리폼 전에는 없었던 원고의 명칭이 표시된 가죽 라벨이 가방 내부에 부착되어 있었다.

리폼된 가방에 사용된 부품들



리폼된 가방 내부에 부착된 가죽 라벨



㉔ 피고는 아래와 같이 리폼을 마친 후 남은 원단 등을 원고측 주문자에게 반환하였다.

리폼 후 돌려받은 원단 등



나.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상품성 (긍정)

1) 관련 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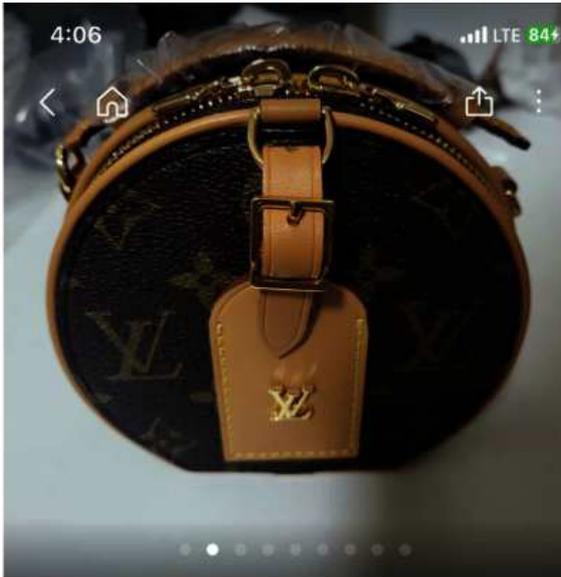
상표의 사용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지갑 및 가방으로서 그 자체로 교환가치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들이 원고 가방 또는 지갑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상당한 교환가치가 있다.

② 저명한 상표가 표시된 고가의 상품(이른바 '명품')은 리폼한 후에도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도 중고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원고 가방을 리폼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예는 아래와 같다.



루이비통 미니 부아뜨 사포 리폼백

여성잡화 · 글을 4일 전

스피디 정품가방으로 리폼한 백입니다. 리폼비용만 60 들어갔구여.
매장가격은 302만원입니다.
리폼이 뭔지 모르시는분은 제발 검색좀 하고 문의하세요.

채팅 8 · 관심 54 · 조회 1312

 **도니도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39°C 🌞
매너온도

♡ **700,000원**
가격 제안 불가

채팅하기



[앱상품]루이비통 더플백 : 네이버 카페

정품 티볼리에서 더플백으로 2020년 8월 리폼샵에서 리폼한 가방입니다.
(티볼리백 구입 영수증 및 리폼 영수증은 따로 없습니다.)
5번 미만으로 사용하여 사진상 가죽 이염 흰거말곤 상태 정말 좋고,
미사용시 가방 케이스에 넣어 잘 보관중입니다.
물거래하시면 조금이라도 할인 해드릴테니 편하게 채팅주세요. 직거래 : 서울만

명품 가방 >

노에 bb 정품 리폼 가방

 **godoryjy** 열심회원 구매문의
2023.02.18. 21:45 조회 52

💬 댓글 0 URL 복사 ⋮



판매 노에 bb 정품 리폼 가방 500,000원

상품 상태 미개봉
결제 방법 직접결제 (네이버페이 송금)
배송 방법 택배 거래, 직거래

판매자 [연락처 보기 >](#)
[본인인증 완료](#)

[상품] 명품 기타 잡화 >

루이비통 장지갑 팝니다



드라켄21 열심회원 구매문의
2023.03.17. 17:49 조회 26

댓글 0 URL 복사



판매 루이비통 장지갑 팝니다

2,000원

상품 상태 거의 새 것
결제 방법 직접결제 (네이버페이 송금)
배송 방법 택배 거래

판매자 ra*****@naver.com | 010-64**-06** [연락처 보기 >](#)
[본인인증 완료](#)

구매 문의 채팅

수수료 없이 송금하기

③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지 않더라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하려면 그 물품 자체가 객관적으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장차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상거래가 이루어져 그것의 점유 또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후에 비로소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되었는지(양산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성·반복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지 1개만 생산되더라도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상표들을 사용하였는지 (긍정)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나목) ㉢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존의 상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새로 상표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대신 기존 상품의 상표 부분을 새로운 상품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예, 원단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기존의 가방을 원자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방을 생산하면서 기존 가방의 원단에 표시된 상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상표가 새로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이상 위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도 피고인이 직접 'FUJIFILM'이라는 상표를 1회용 카메라에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된 'FUJIFILM'이라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1회용 카메라를 회수하여 위 'FUJIFILM'이라는 상표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1회용 카메라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FUJIFILM' 상표의 사용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2) 판단

물건의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이 낡거나 고장이 났을 때 원래 모습이나 기능을 회복하도록 수선업자에게 주문하여 수선할 수 있고, 이러한 단순한 수선을 마친 상품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선목적물에 표시된 상표가 수선업자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낡거나 고장 난 상품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원래의 상품과는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신상품에 표시된 상표는 원래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가 아니라 그 신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¹⁾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출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리폼에 의하여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단순히 수선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새로 생산한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리폼이 단순한 수선이라고 평가될 경우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표시된 상표는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 사건 리폼이 새로운 상품의 생산이라고 평가될 경우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표시된 상표는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리폼의 과정,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리폼 전 제품을 완전히 해체하여 그 부품을 절단한 다음 리폼 전 제품의 부품을 원자재로 재활용하여 물리·화학적 처리, 박음질, 부품들의 부착, 상표의 부착 등의 공정을 거쳐, 리폼 전 제품과 비교할 때 제품의

1) 예를 들어 건축업자 갑이 아파트를 건축한 후 그 아파트 건축의 출처가 자신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아파트의 외벽에 갑의 상표를 표시하여 두었다고 가정하면 ① 그 아파트의 외벽에 균열이 가고 도색이 흐려져서 다른 건축업자 을이 그 외벽을 수선하면서 갑의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더라도, 그 상표를 보는 일반수요자는 그 상표가 그 아파트를 수선한 자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당초 그 아파트를 건축한 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인 반면 ② 그 아파트가 오래되어 다른 건축업자 병이 그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철거한 아파트의 잔해의 일부를 새 아파트의 원자재로 이용하여 새 아파트를 완공한 후 그 외벽에 갑의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그 새 아파트의 상표를 보는 일반수요자는 그 상표가 철거된 아파트를 건축한 자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 아파트를 건축한 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개수(리폼 전 제품 1개로부터 새로운 제품 2개 이상을 제조한 경우도 있다),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이 심하게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리폼 제품의 경우 종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단순한 수선 또는 장식의 경우 종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서 이 사건 리폼은 단순한 수선 또는 장식과 구별된다.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의 외부 원단에는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그 원단을 절단하여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외부 원단으로 그대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출처가 마치 이 사건 상표들의 상표권자인 원고인 것처럼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소정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리폼주문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정의 '상품의 인도' 행위를 한 것이다.

라.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표시된 상표들과 피고의 업무 간 관련성 (긍정)

1)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호에서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상표'를 정의하고, 제2호에서 "서비스포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서비스표'를 정의하였다. 여기서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의미한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84 판결 등 참조).

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표'를 정의하고 있고, 구 상표법과 달리 별도로 '서비스표'를 정의하지 않고 있다²⁾.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으로 하는 재산의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또는 수선, 작업, 운송 등의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지 않고 '상표'를 정의하면서 '자기의 상품(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규정한 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란 자기가 하는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이 하는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2)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 2호를 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개정된 것과 관련한 특허청의 입법자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商'이란 '상업'의 준말이므로, 이의 객체가 물건인 경우(상품)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商'의 개념과 불필요하게 중첩되고, 개인적인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해석상 '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거래' 혹은 '업으로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필요 없으며, '商'의 개념은 생산·가공·판매에 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확장되는 상거래의 유형을 포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016. 2. 3.).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고, 여기서 '업무'라 함은 '독립하여 영업으로 하는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또는 수선, 운송 등의 상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당해상표'라 하고, 당해상표의 상표권자를 '당해상표권자'라 한다)가 표시된 상품(이하 '당해상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두 부류로 나누면, 당해상품을 신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 또는 자본재로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거나 당해상품을 수입, 수출, 판매, 전시, 대여 등에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자(이하 통틀어 '업무용소비자'라 한다)와 당해상품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하 '비업무용소비자'라 한다)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당해상품의 업무용소비자가 당해상품을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하여 신상품을 생산하고(이하 '당해상품가공방식 신상품생산'이라 한다) 그와 동시에 당해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당해상표를 그 신상품에 표시하는(이하 '당해상표의 무단표시'라 한다)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주문하여 그렇게 하는지 불문하고 그 신상품은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므로 그 무단표시는 당해상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반면 당해상품의 비업무용소비자가 타인에게 주문하지 않고 직접 당해상품가공방식 신상품생산 및 당해상표의 무단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상품은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 아니므로 그 무단표시는 당해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품의 가공을 업무로 하는 자(이하 '가공업자'라 한다)가 타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상품가공방식 신상품생산 및 당해상표의 무단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상품은 자신이 하는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고 그 무단표시는 '업무와 관련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는 상표법이 적용된다.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소유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당해상품가공방식 신상품생산 및 당해상표의 무단표시), 그의 신분은 비업무용소비자이므로 위 행위는 이 사건 상표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가방의 수선,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리폼 주문자를 상대로 독립하여 영업으로 이 리폼 후 제품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그의 신분은 비업무용소비자가 아니라 가공업자이므로, 위 행위는 이 사건 상표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리폼 후 제품 상의 이 사건 상표들이 상표의 기능을 하는지 (긍정)

1) 관련 법리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포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

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상표가 출처표시를 위해 상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부착된 이 사건 상표들은 출처표시 기능을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표들을 상표로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리폼 후 제품과 이 사건 상표들의 관계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이 사건 상표들의 지정상품인 가방 또는 지갑에 해당하고, 도형 상표인 이 사건 상표들은 이 사건 리폼 후 제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상표들을 사용한 태양

원고 가방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외부 원단에는 이 사건 상표들이 반복적으로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외관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상표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상표들의 주지저명성

이 사건 상표들은 국내외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원고는 원고 가방이나 지갑의 외부 원단에 이 사건 상표들을 반복적인 패턴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드러내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기법은 일반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상표들을 사용한 의도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진품인 원고 가방 또는 지갑과 비교할 때 형태, 상표의 위치 등이 유사한 점, 리폼주문자의 주문 동기는 진품인 원고 가방 등을 새로 고가로 구입하는 대신 그보다 저렴한 이 사건 리폼 비용을 지출하여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보유하려는 것인 점, 피고는 주문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이 마치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진품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상표가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상표 사용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자와 같은 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그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의 인식까지 모두 포함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상표 사용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자와 같은 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인식만을 기준으로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고가의 유명상표를 저가의 위조품에 그대로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표의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³⁾

3)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상표 사용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자와 같은 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인식만을 기준으로 구매자가 출처를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

따라서 상품의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표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표를 출처표시를 위해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32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⁴⁾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리폼주문자 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았고, 이 사건 리폼주문자는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생산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임을 잘 알았을 것이므로, 리폼주문자가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출처가 원고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리폼주문자는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양도, 인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점, 그 상대방인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출처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수요자는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들은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표장 및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긍정)

1) 관련 법리

론은, 구체적 거래실정상 유명 브랜드 제품의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가의 위조품 판매 행위를 상표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대법원 2011도6797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관한 사례이나,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상표법 제 89조), 제3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범위를 유사상표 및 유사상품까지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또한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별지 2의 리폼 후 제품

별지 2의 1, 3 내지 16, 18 내지 23번 기재 리폼 후 제품들 및 24번 기재 리폼 후 제품 3개 중 오른쪽 1개 제품에 표시된 각 표장은 이 사건 상표 1의 표장과 동일·유사하고, 해당 리폼 후 제품들은 이 사건 상표 1의 지정상품 중 '핸드백'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별지 2의 2, 17번 기재 리폼 후 제품들 및 24번 기재 리폼 후 제품 3개 중 왼쪽으로부터 2개 제품에 표시된 표장은 이 사건 상표 2의 표장과 동일·유사하고, 해당 리폼 후 제품들은 이 사건 상표 1의 지정상품 중 '핸드백'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나) 별지 3의 각 리폼 제품

별지 3의 리폼 후 제품들에 표시된 표장은 이 사건 상표 1의 표장과 동일·유사하고, 해당 리폼 후 제품들은 이 사건 상표 1의 지정상품 중 '비귀금속제 지갑'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사. 피고가 직접불법행위자인지(긍정)

1) 관련 법리

상품에 타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상표법 제89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상표법 제230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란 자기가 하는 '업무에 관련된'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여기서 '업무'라 함은 '독립하여 영업으로 하는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운송 등의 상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법 제89조 위반 또는 제108조 제1항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주체가 자신이 하는 '업무' 즉 '독립하여 영업으로 하는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운송 등의 상행위'와 관련하여 그런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상표법 제230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이러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신분범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60조 제1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민법 제760조 제3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형법 제30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

며(형법 제31조 제3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2조 제1항).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형법 제33조). 따라서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등 참조).

주문계약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제품에 표시하여 그 주문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주문자가 그 등록상표의 보유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생산자 또는 가공자가 직접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단순히 주문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실제 상표를 부착한 생산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등 참조).⁵⁾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외부 원단에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소정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고, ②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리폼주문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정의 '상품의 인도'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리폼의 주문자는 이

5) 주문자가 대상 상표의 적법한 등록상표권자임을 전제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 방식)에 의한 상품 생산, 수출의 경우에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후143 판결이나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등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사건 상표들의 보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직접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단순히 주문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 소결론 (상표권 침해 긍정)

따라서 피고는 가공업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제조한 다음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주문자들에게 인도함으로써 직접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피고가 별지 2의 1, 3 내지 16, 18 내지 23번 기재 각 리폼 후 제품, 별지 2의 24번 기재 리폼 후 제품 3개 중 오른쪽 1개 제품, 별지 3의 각 리폼 후 제품을 제조 및 인도한 행위는, 이 사건 상표 1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② 피고가 별지 2의 2, 17번 기재 각 리폼 후 제품, 별지 2의 24번 기재 리폼 후 제품 3개 중 왼쪽으로부터 2개 제품을 제조 및 인도한 행위는 이 사건 상표 2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4. 주위적 청구원인(상표권 침해) 관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모두 배척)

가. 소비자는 리폼할 자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리폼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배척)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의 소유자가 이를 어떻게 소비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경업적 요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이 사건 리폼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리폼은 상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표법은 '업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인데 이 사건 리폼 전 제품 소유자인 리폼주문자는 '업으로서' 이 사건 리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위법하지 않은 리폼주문자의 행위에 가공·방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리폼 행위는 비상업적, 개인적 행위로서 역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이 사건 리폼주문자가 업무용소비자라는 신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 자신의 업무와 아무 관련 없이 이 사건 상표를 신상품에 표시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공업자라는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외부 원단에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소정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고, ②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리폼주문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정의 '상품의 인도' 행위를 하였으므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라는 불법행위를 직접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리폼주문자의 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직접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배척)

1) 피고의 주장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표를 '표시'한다 함은, 상품에 상표를 인쇄, 부착하는 등으로 외부에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제품 생산 시 최초에 상표를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등으로 1차적으로 표시 행위는 완료된다. 그 후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상품을 수선, 가공하는 경우, 동일한 상표를

재인쇄하거나 재부착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볼 때 이를 '상표를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원래의 상표가 인쇄 또는 부착된 표시에 어떠한 변경이나 행위를 가함이 없다면, 표시 '행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폼은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리폼을 하면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외부 원단에 이 사건 상표들이 그대로 표시되도록 하였으므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한 상품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주장 (배척)

1) 피고의 주장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법의 취지나 상표의 기능의 관점에서 보아 양도 또는 인도 행위가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적인 것이 아니고 출처식별표시 기능 등을 이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인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리폼 후 제품을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는 위 규정상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인도'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반드시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리폼의 주문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피고가 주문자 소유의 중고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원자재로 이용하여 새로운 가방, 지갑 등을 제작하여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그 완성품인 리폼 후 제품의 소유권은 재료의 주요 부분(원단)을 제공한 주문자(중고 가방 소유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고, 피고는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위하여 이 사건 상표들을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표시하였으며, 피고가 리폼주문자에게 리폼 후 제품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한 상품을 타인에게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니,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 행위를 한 것이다. 설령 인도의 상대방이 실제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인도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가 업으로 이 사건 상표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배척)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리폼 전 제품 소유자로부터 리폼주문을 받아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수선, 변형 가공한 후 반환하였을 뿐이다. 하나의 리폼수선 행위는 한 명의 의뢰인이 하나의 가방에 대해 하나의 수선업자에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모든 리폼수선 행위는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리폼과 동일한 성격의 각각의 독립된 비상업적·개인적 행위에 불과하다. 피고는 리폼 후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않았고, 피고 사업의 광고에 이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표들을 업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수요자의 리폼 의뢰에 따라 매번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을 창작하였다기보다는 사실상 리폼 가능한 디자인의 종류에 관한 일정한 수의 샘플 디자인을 미리 준비하고, 주로 그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리폼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리폼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리폼과 동일한 성격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는 독립하여 가방 등을 수선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수의 리폼주문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리폼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가공업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표들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상표들을 상표의 기능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배척)

1) 디자인적 사용에 불과하다는 주장 (배척)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들은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의 외부 원단 전체에 표시되어 디자인으로서의 기능하고 있으므로, 그 원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만드는 것은 출처 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으로서 사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등 참조). 다만 등록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 132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도형 상표인 이 사건 상표들이 가방이나 지갑의 원단에 반복적인 패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해당 제품의 디자인이 될 수 있는 모양에도 해당할 수 있다. 원고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표들을 원고 가방이나 지갑의 원단에 패턴 형식으로 오랫동안 표시하여 왔고, 그 결과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원단의 패턴만으로도 그것이 원고의 가방 또는 지갑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원단 패턴은 순전히 디자인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타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상표들을 패턴 형식으로 표시한 원단을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이 사

건 상표들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배척)

가) 피고의 주장

원고 가방이나 지갑은 소위 명품이라는 고급 물품으로 백화점, 판매점 등 특별히 정해진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면서, 그 거래 시장은 상류층을 위한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리폼 후 제품의 거래는 사인들 간에 온라인에서 일대일로 아주 적은 양만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시장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가방이나 지갑은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진품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며 희소성이 있는 중고품의 경우 신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속성이 있는 반면, 리폼 후 제품의 경우 일반인이 육안으로 볼 때 명품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구매자도 명품과 같은 품질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리폼'인 사정을 알고 거래한다. 중고 원고 가방이나 지갑과 같은 명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거래하므로, 리폼 후 제품을 명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거래 실정을 볼 때, 리폼 후 제품은 명품과 명백히 구별되어 경쟁상품이 될 수 없어 양자 간에는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 판매 후 혼동 이론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로 '판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리폼의 경우 '판매'가 없었고 일반소비자들이 겪는 혼동으로부터 피고가 얻는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출처가 피고임을 잘 아는 리폼주문자는 이 사건 상표들로 인하여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없지만, 리폼주문자를 제외한 일반수요자 즉 리폼주문자로부터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들로 인하여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출처가 원고인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다.

중고 원고 가방 또는 지갑의 경우 거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장차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이 그러한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해쳐 소비자들에게 현실적인 오인 또는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리폼을 주문한 자들이 자신은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재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기재된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의1 내지 1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들과 피고 사이의 리폼계약 과정에서 재판매 금지에 관한 약정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 점, 원고 가방을 리폼한 제품들이 실제로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위 사실확인서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매매, 임대 또는 전시의 목적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⁶⁾

3) 품질보증기능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주장 (배척)

가) 피고의 주장

6) 피고는 일반 수요자들의 혼동으로부터 자신이 얻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일반 수요자들이 원고의 제품으로 혼동할만한 제품으로 리폼하는 것이 이 사건 리폼 영업의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리폼의 대상인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은 이미 대부분 A/S가 안되거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제품 등 이미 품질이 훼손되어 수선, 가공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보증기능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상품의 품질보증기능과 관련하여 제품 품질의 균일성은 동일 시장 내에서의 균일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과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이므로, 같은 시장에서 품질의 균일성을 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표의 품질보증기능 측면에서 보아도 이 사건 리폼을 상표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리폼 행위는 이 사건 상표들의 출처표시기능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기능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리폼 과정에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원단이 마치 새 원단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화학적·물리적 처리 및 박음질, 부품들과 내부 라벨의 부착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② 피고는 이러한 화학적·물리적 처리와 박음질에 있어서 원고의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원고가 만든 것이라고 오인하고 중고시장에서 이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소비자들은 그것이 중고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가방의 품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바. 상표권이 소진되었으므로 이 사건 리폼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배척)

가) 피고의 주장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리폼의 주문자가 원고가 가방을 구매하였을 때 이미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권은 소진되었으므로, 이 사건 리폼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없다.

상표권이 소진된 상품에 관하여도,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여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진론의 예외가 적용되어 상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소진론의 예외는 변형된 물건을 다시 시장에 출시하는 상업적 거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다시 시장에 출시한 것이 아니므로, 소진론의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성능이나 품질을 비교할 때 동일성을 상실하지도 않았다. 즉 가방의 경우 성능이나 품질을 비교할 때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가방의 원단인데,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의 원단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상품의 본질적인 부분의 교체나 변경이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동일하다고 평가되므로, 소진론의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

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설령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들의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은 해체 후 원단 등이 절단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순간 종전의 상품 가치는 없게 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폼은, 리폼 전 제품의 부품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처리, 박음질, 부품들의 부착, 내부 라벨의 부착 등의 공정을 거쳐 리폼 전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행위인 점, ③ 별지 7,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비교하면, 개수,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리폼은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리폼을 하기 전에 리폼주문자가 제공한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이 실제로 원고의 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판매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피고는 2024. 5. 3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리폼수선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제품이 원고가 실제로 판매한 제품인지 여

부는 피고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이 원고의 의사에 의해 판매되어 상표권이 소진된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들의 상표권이 소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들에 대하여 여전히 상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표현의 자유에 기하여 이 사건 리폼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배척)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가방을 어떻게 변형 가공하는가,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은 헌법상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상표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부여된 상표권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리폼은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물건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또는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변형·가공하는 행위가 외견상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소정의 상표의 표시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표의 부착 또는 상표가 부착된 물건의 변형·가공이 순수한 예술적 표현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 또는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리폼은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순수한 예술적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수요자들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출처가 원고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이유로 이 사건 리폼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배척)

1) 피고의 주장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수리(repair), 업사이클링(upcycling), 리퍼비시(refurbishing) 등으로 상품의 수명을 늘리거나 이미 수명을 다한 상품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의 소유자들은 중고가 된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의 수명을 늘리거나 이미 수명을 다한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리폼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리폼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수리(repair), 업사이클링(upcycling), 리퍼비시(refurbishing) 등 중고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수명을 다한 제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서비스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비스에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으므로, 위 서비스를 하기만 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위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원래 제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낼 경우, 위 서비스를 거친 상품에 기존의 상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일반수요자는 위 서비스를 거친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서비스를 하는 자는

오인·혼동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위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의 상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상품을 새로 생산하는 자는, 기존의 상표를 제거하는 방법, 기존 상품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위 서비스를 마친 제품이라는 점을 표시하거나 위 서비스의 출처를 새로 표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가 위 서비스를 거친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고가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외부 원단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는 일반수요자의 출처 오인·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리폼하였음, 재생품임, 재활용품임, 리사클제품임' 등의 취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리폼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 법익균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리폼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배척)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리폼 전 제품 소유자가 리폼에 관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직접 리폼을 하기 어려우므로, 수선업자에게 주문하여 리폼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리폼 전 제품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리폼 전 제품 소유자로부터 주문받아 리폼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하면, 스스로 리폼을 할 능력이 없는 이 사건 리폼 전 제품 소유자가 리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가 된다. 피고의 이 사건 리폼이 상표권 침해라면 리폼주문자는 피고와 공동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리폼 전 제품 소유자의 상품사용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3조 제1항).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우리 형법의 독특한 규정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비업무용소비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가지는 점, ② 비업무용소비자가 당해상품을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해상품의 성능, 품질, 형태, 모양, 크기, 색상 등을 최대한 자신의 특수성, 기호, 취향 등에 맞추기 위하여 당해상품을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하여 최적화[이하 '개인화(customizing)'라 한다]할 목적으로 신상품을 생산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비업무용소비자는 직접 당해상품을 가공할 만한 능력, 수단, 시간 등이 부족하므로 가공업자에게 주문하는 방식으로 가공할 수밖에 없는 점, 신상품으로부터 당해상표를 제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점(예 상품의 대부분에 당해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④ 가공업자가 비업무용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상품가공방식으로 생산한 신상품에 당해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할 경우 비업무용소비자로부터 당해상품을 개인화할 수단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공업자가 비업무용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당해상품가공방식으로 생산한 신상품에 당해상표

를 무단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언제나 위법한 것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생산의 주된 동기 또는 목적이 당해상품의 개인화이고 그 무단표시로 인하여 당해상표권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경우에는, 그 무단표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비업무용소비자인 이 사건 리폼 전 제품 소유자의 주문에 따라 당해상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신상품에 당해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점, ② 피고가 당해상품의 품질, 성능, 디자인 등을 심하게 변경한 점(개수,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을 심하게 변경함), ③ 피고가 생산한 신상품은 원고가 생산한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인 점, ④ 피고는 일반수요자가 신상품의 출처가 원고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별도의 표시(예 리폼, 재생품, 재활용품, 리사이클제품 등)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의 무단표시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일부 인용)

가. 금지 청구 부분 (인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한 후 리폼주문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들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어 있는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일부 인용)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가방 및 지갑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어 피고와 동종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 21666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위 대법원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가방 소유자들로부터 수선비 명목으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 1개당 100,000원 내지 700,000원을 받았고, 그 매출액의 합계는 23,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선비 중 피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가려낼 만한 자료는 없다. 달리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힐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15,000,000원(= 이 사건 상표 1에 관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13,500,000원 + 이 사건 상표 2에 관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1,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 가방이 상당히 고가이고, 이 사건 각 상표의 가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선비 단가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으로 인한 매출액은 23,80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의 관련 매출액 전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이 현실적으로 중고 상품 등으로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등이 저해된 정도가 매우 크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4. 1.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예비적 청구 부분 (판단 생략)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원인인 상표권 침해 주장이 전부 배척될 것에 대비하여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주장을 인용하고, 그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범위는 예비적 청구와 동일할 것이므로,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금지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금지청구 인용 부분)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우성엽

 판사 김기수

별지 1

이 사건 상표들

1. 등록번호 제330235호

가. 출원일/ 등록일: 1994. 7. 1./ 1995. 1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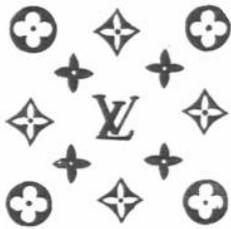


나. 포장:

다. 지정상품: 제18류 숄더백, 핸드백, 비귀금속제 지갑 등

2. 등록번호 제109060호

가. 출원일/ 등록일: 1983. 8. 5./ 1985. 1. 17.



나. 포장:

다. 지정상품: 제25류 지갑, 핸드백 등

별지 2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된 중고 가방을 이용해 다른 디자인의 가방을 제작한 사례들)

	리폼 전 제품 형태	리폼 후 제품 형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2464499732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70&&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270717919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579&&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2&&com_board_id=17&&com_board_id=1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2004925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26&&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A%CE%BE%C6%B6%DF&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2078042153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37&&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B%E8%C7%C3%B6%F3&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737063187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09&&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C8%FC%BB%F6&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2078263676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38&&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2064944556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36&&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F%C2%B4%F5%B0%ED&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2057683212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34&&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2004956419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27&&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983923501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24&&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890453794 • http://gangnamsa.com/default/03/06.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14&&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page=1&&com_board_id=16&com_board_id=1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782550382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12&&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D%BA%C7%C7%B5%F0&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7422387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10&&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718780616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07&&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2&&com_board_id=17&&com_board_id=1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701935248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05&&com_board_search_code=sub&com_board_search_value=%B8%F9%C5%D7%B4%BA&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695179301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04&&com_board_search_code=sub&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2&&com_board_id=17&&com_board_id=17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686376363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03&&com_board_search_code=sub&com_board_search_value=%B8%D6%C6%BC&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684437014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02&&com_board_search_code=sub&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2&&com_board_id=17&&com_board_id=17 		

	d=1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667073820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599&&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2&&com_board_id=17&&com_board_id=1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661756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598&&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2&&com_board_id=17&&com_board_id=1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659034602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597&&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2&&com_board_id=17&&com_board_id=1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644782938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596&&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2&&com_board_id=17&&com_board_id=1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626847146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591&&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9%E9%C6%D1&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545642426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588&&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2&&com_board_id=17&&com_board_id=17 		

별지 3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된 중고 가방을 이용해 지갑을 제작한 사례들)

	리폼 전 제품 형태	리폼 후 제품 형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2418594398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67&&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684425034 • http://gangnamsa.com/default/03/07.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01&&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C1%F6%B0%A9&com_board_page=&&com_board_id=17&&com_board_id=1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38269770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1078608439 • http://gangnamsa.com/default/03/06.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594&&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B7%E7%C0%CC%BA%F1%C5%EB&com_board_page=2&&com_board_id=16&&com_board_id=1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blog.naver.com/aizimk2/220961036438 • http://gangnamsa.com/default/03/06.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584&&com_board_search_code=subject&com_board_search_value=%C1%F6%B0%A9&com_board_page=&&com_board_id=16&&com_board_id=16 	

별지 4

별지 2 기재 이 사건 리폼 후 제품과 동일·유사한 원고 제품들

[별첨 1]

별지 5

별지 3 기재 이 사건 리폼 후 제품들과 동일·유사한 원고 제품들

[별첨 2]

별지 6

관계 법령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2. 3.>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7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의 차이점 등 분석 1

(피고가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중고 가방을 이용해 다른 디자인의 가방을 제작한 사례들)

[별첨 3]

별지 8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차이점 등 분석 2

(피고가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중고 가방을 이용해 다른 디자인의 지갑을 제작한 사례들)

[별첨 4]

끝.

별첨 1[별지 4]

(별지2 기재 이 사건 리폼 후 제품과 동일·유사한 원고 제품들)

	리폼 전 제품 형태	리폼 후 제품 형태	리폼 후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고의 제품 사진	원고의 제품 증거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증거 번호는 순차적으로 기재)
1	 <p>모델명: 루미네즈 PM 모델번호: M93410 크기: 44 x 30 x 18 cm</p>		 <p>모델명: 뷔띠뜨 부아뜨 샤편 모델번호: M43514 크기: 17.5 x 16.5 x 7.5 cm</p>  <p>모델명: 생통주 모델번호: M44593 크기: 22 x 16 x 8 cm</p>	<p>갑 제30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2 갑 제30호증의 3</p>

			 <p>모델명: 뷔띠 삭 플라 모델번호: M81417 크기: 14 x 17 x 5 cm</p>	
2	 <p>모델명: 우솔라 모델번호: M40123 크기: 41 x 27 x 17 cm</p>	 <p>크기(추정): 19 x 16 x 5 cm</p>	 <p>모델명: 조이 월렛</p>	<p>갑 제30호증의 4</p>

<p>3</p>	 <p>모델명: 토탈리 PM 모델번호: M56688 크기: 39 x 24 x 14 cm</p>		 <p>모델명: 미니 부아뜨 샤프 모델번호: M44699 크기: 13 x 12 x 6.5 cm</p>	<p>갑 제30호증의 1</p>
<p>4</p>	 <p>모델명: 뽀띠 버킷 모델번호: M42238 크기: 23 x 26 x 16 cm</p>		 <p>모델명: 뽀띠 삭 플라 모델번호: M81295 크기: 14 x 17 x 5 cm</p>	<p>갑 제30호증의 5</p>

<p>5</p>	 <p>모델명: 팔레르모 GM 모델번호: M40146 크기: 45 x 36 x 20 cm</p>		 <p>모델명: 범백 모델번호: M43644 크기: 37 x 14 x 13 cm</p>	<p>갑 제30호증의 6</p>
<p>6</p>	 <p>모델명: (좌) 베티놀즈 호리존탈, (우) Montoegueil GM 모델번호: (좌) M51154, (우) M95566 크기: (좌) 34 x 30 x 14 cm, (우) 42 x 24 x 18 cm</p>		 <p>모델명: 생통주 모델번호: M43557 크기: 22 x 16 x 8 cm</p>	<p>갑 제30호증의 7 갑 제30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8</p>

			 <p>모델명: 미니 부아뜨 샤프 모델번호: M44699 크기: 13 x 12 x 6.5 cm</p>  <p>모델명: 노에 BB 모델번호: M46983 크기: 22 x 24 x 15 cm 리폼후 제품 크기(추정): 10 X 13 X 5 cm</p>	
7	 <p>모델명: 아치 MM 모델번호: M44869</p>	 <p>크기(추정): 35 x 26 x 10 cm</p>		<p>갑 제30호증의 9</p>

	크기: 41 x 32 x 22 cm		모델명: 삭 플라 BB 모델번호: M46265 크기: 21.5 x 22 x 9 cm	
8	 <p>모델명: Cabas Mezzo 모델번호: M51151 크기: 38 x 33 x 15 cm</p>	 <p>크기(추정): 19 x 18.5 x 8 cm</p>	 <p>모델명: 스펀티니</p>	갑 제30호증의 10
9	 <p>모델명: 팔라스 모델번호: M43705 크기: 34 x 26 x 13 cm</p>		 <p>모델명: 발리젯 버티컬 모델번호: M68623 크기: 14.5 x 18.5 x 6 cm</p>	갑 제30호증의 11

<p>10</p>	 <p>모델명: (좌) Boetie MM, (우) 트루빌 모델번호: (좌) M45714, (우) M42228 크기: (좌) 46 x 31 x 15 cm, (우) 30 x 23.5 x 11.5 cm</p>		 <p>모델명: 알마 BB 모델번호: M46990 크기: 23.5 x 17.5 x 11.5 cm</p>  <p>모델명: 몽테뉴 BB 모델번호: M41055 크기: 29 x 20 x 13 cm</p>	<p>갑 제30호증의 12 갑 제30호증의 13</p>
<p>11</p>	 <p>모델명: 스피디 35 모델번호: M41107 크기: 35 x 23 x 18 cm</p>		 <p>모델명: 네오노에 모델번호: M44020 크기: 26 x 26 cm x 17.5 cm</p>	<p>갑 제30호증의 14 갑 제30호증의 21</p>

			 <p>모델명: 생통주 모델번호: M43555 크기: 22 x 16 x 8 cm</p>	
12	 <p>모델명: 스피디 30 모델번호: M41108 크기: 30 x 21 x 17 cm</p>	 <p>크기(추정): 18.5 x 12 x 7 cm</p>	 <p>모델명: 포쉐트 메티스 모델번호: M44875 크기: 25 x 19 x 7 cm</p>	갑 제30호증의 19

<p>13</p>	 <p>모델명: 스피디 30 모델번호: M41108 크기: 30 x 21 x 17 cm</p>		 <p>모델명: 생통주 모델번호: M43557 크기: 22 x 16 x 8 cm</p>	<p>갑 제30호증의 7</p>
<p>14</p>			 <p>모델명: 몽테뉴 BB 모델번호: M44160 크기: 29 x 20 x 13 cm</p>	<p>갑 제30호증의 22</p>

	<p>모델명: 브레아 MM 모델번호: M91456 크기: 34 x 25 x 14 cm</p>			
15	  <p>모델명: 앳치 MM 모델번호: M40249 크기: 41 x 32 x 22 cm</p>		 <p>모델명: 몽테뉴 BB 모델번호: M41055 크기: 29 x 20 x 13 cm</p>	<p>갑 제30호증의 13</p>
16				<p>갑 제30호증의 15</p>

	<p>모델명: 앳치 MM 모델번호: M41066 크기: 41 x 32 x 22 cm</p>		<p>모델명: 네오노에 MM 모델번호: M45256 크기: 26 x 26 x 17.5 cm</p>	
17	 <p>모델명: 우솔라 멀티컬러 모델번호: M40124 크기: 41 x 27 x 17 cm</p>	 <p>크기(추정): 19 x 12 x 7 cm</p>	<p>직접 대응하는 원고 제품은 발견하지 못했음</p>	<p>해당 없음</p>
18	 <p>모델명: 에스트렐라 MM 모델번호: M41232 크기: 40 x 29 x 15 cm</p>		 <p>모델명: 나노 노에 모델번호: M81266 크기: 13 x 16 x 10 cm</p>	<p>갑 제30호증의 20</p>

19	 <p>모델명: Galliera PM 모델번호: M56382 크기: 42 x 29 x 17 cm</p>		 <p>모델명: 부아뜨 샤프 수플 모델번호: M45647 크기: 20 x 22.5 x 8 cm</p>	갑 제30호증의 16
20	 <p>모델명: 오데온 PM 모델번호: M56390 크기: 28 x 30 x 5 cm</p>		 <p>모델명: 생통주 모델번호: M43555 크기: 22 x 16 x 8 cm</p>	갑 제30호증의 21

21	 <p>모델명: Compiegne 모델번호: M51845 크기: 28 x 18 x 7 cm</p>		 <p>모델명: 카사이 클러치 모델번호: M42838 크기: 25 x 15.5 x 6.5 cm</p>	<p>갑 제30호증의 17 (제17면)</p>
22	 <p>모델명: 앳치 MM 모델번호: (좌) M40249, (우) M41066 크기: 41 x 32 x 22 cm</p>		 <p>모델명: 트위스트 버킷 모델번호: M52804 크기: 26 x 29 x 14 cm</p>	<p>갑 제30호증의 23</p>

23	 <p>모델명: 보스포어 백팩 모델번호: M40107 크기: 38 x 31 x 11 cm</p>	 <p>크기(추정): 28 x 18 x 10 cm</p>	 <p>모델명: 유틸리티 크로스바디 모델번호: M80446 크기: 18 x 11 x 10 cm</p>	갑 제30호증의 18
24	 <p>모델명: (좌) 스피디 30, (중) Roxbury Drive, (우) Batignolles 모델번호: (좌) M92643, (중) M91987, (우) M51156 크기: (좌) 30 x 18 x 21 cm, (중) 32 x 20 x 10 cm, (우) 27 x 24 x 16 cm</p>		 <p>모델명: 생통주 모델번호: M43555 크기: 22 x 16 x 8 cm</p>	갑 제30호증의 21

별첨 2[별지 5]

(별지3 기재 이 사건 리폼 후 제품들과 동일·유사한 원고 제품들)

	리폼 전 제품 형태	리폼 후 제품 형태	리폼 후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고의 제품 사진	원고의 제품 증거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증거 번호는 순차적으로 기재)
1	 <p>모델명: 아치 GM 모델번호: M40259 크기: 50 x 36 x 25 cm</p>		 <p>모델명: 지피 월릿 모델번호: M42616 크기: 19.5 x 10.5 x 2.5 cm</p>  <p>모델명: 에밀리 월릿 모델번호: M60697 크기: 19 x 10 x 2 cm</p>	<p>갑 제31호증의 1 갑 제31호증의 2 갑 제31호증의 3 갑 제31호증의 4 갑 제31호증의 5 갑 제31호증의 6</p>



모델명: 방돔 카드 홀더

모델번호: M81855

크기: 10 x 6.8 x 1.4 cm



모델명: 패스포트 커버

모델번호: M64502

크기: 10 x 14 x 2.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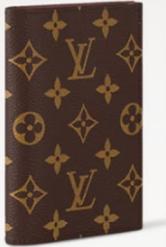


모델명: 멀티플 월릿

모델번호: M60895

크기: 11.5 x 9 x 1.5 cm

			 <p>모델명: 네오 포트 카르트 모델번호: M60166 크기: 11 x 7 x 0.6 cm</p>	
2	  <p>모델명: 스피디 35 모델번호: M41107 크기: 35 x 23 x 18 cm</p>		 <p>모델명: 멀티플 월릿 모델번호: M60895 크기: 11.5 x 9 x 1.5 cm</p>  <p>모델명: 방돔 카드 홀더 모델번호: M81855 크기: 10 x 6.8 x 1.4 cm</p>	<p>갑 제31호증의 5 갑 제31호증의 3 갑 제31호증의 4</p>

			 <p>모델명: 패스포트 커버 모델번호: M64502 크기: 10 x 14 x 2.5 cm</p>	
3	  <p>모델명: 스피디 35 모델번호: M41107 크기: 35 x 23 x 18 cm</p>	 	 <p>모델명: 로잘리 코인 퍼스 모델번호: M41939 크기: 11 x 8 x 2.5 cm</p>	<p>갑 제31호증의 7</p>

4



모델명: 아치 GM
모델번호: M40259
크기: 50 x 36 x 25 cm



모델명: 에튀 보야주 MM
모델번호: M44499
크기: 34 x 25 x 1 cm



모델명: 브라짜 월릿
모델번호: M66540
크기: 10 x 19 x 2 cm

갑 제31호증의 8
갑 제31호증의 9

5



리폼전 제품의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설문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모델명: 지피 월릿
모델번호: M42616
크기: 19.5 x 10.5 x 2.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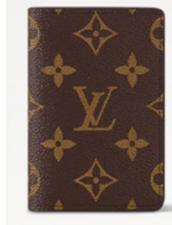
갑 제31호증의 1
갑 제31호증의 4
갑 제31호증의 10



모델명: 패스포트 커버

모델번호: M64502

크기: 10 x 14 x 2.5 cm



모델명: 포켓 오거나이저

모델번호: M60502

크기: 7.5 x 11.1 x 1 cm

별첨 3[별지 7] :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의 차이점 등 분석 1

순번	리폼 전 사진	리폼 후 사진	동일한 점	유사한 점	차이점	증거	동일성을 해할 정도 여부
1			<p>검정색 모노그램 앙 프렐뜨 소가죽 원단의 가방</p>	<p>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 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A, B 제품은 가방 윗면의 여닫는 부분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음. 3. 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B 제품은 크로스백 끈이 있음.</p>	<p>리폼 전 1개의 가방이 리폼 후 크기가 작고 모양이 전혀 다른 3개의 가방으로 되었음.</p> <p>리폼 후 제품들을 리폼 전 제품과 비교해 보면</p> <p>[리폼 후 A 제품] 리폼 후 A 제품은 리폼 전 제품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전체 모양이 리폼 전 제품은 직사각형에 가까우나, 리폼 후 A 제품은 원형이며, 표면 질감이 리폼 전 제품은 부드럽고 약간의 신축이 있어 보이나, 리폼 후 A 제품은 팽팽하고 신축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손잡이가 리폼 전 제품은 2개가 양쪽으로 있으나, 리폼 후 A 제품은 1개가 동그란 형태의 윗면에 있고, 리폼 후 A 제품은 정면에 리폼 전 제품에는 없는 큰 가죽장식(a)이 있음.</p> <p>[리폼 후 B 제품] 리폼 후 B 제품은 리폼 전 제품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표면 질감이 리폼 전 제품은 부드럽고 약간의 신축이 있어 보이나, 리폼 후 B 제품은 팽팽하고 신축의 여지가 전혀</p>	<p>갑 제 12호증의 1</p>	<p>리폼 후 3개 제품 모두 ○ (동일성을 해할 정도임, 이하 ○는 같은 의미임)</p>

					<p>없으며, 손잡이가 리폼 전 제품은 2개가 양쪽으로 있으나, 리폼 후 B 제품은 짧은 1개가 윗면 한쪽에 치우쳐 있고, 리폼 후 B 제품은 정면에 리폼 전 제품에는 없는 술이 달린장식(b)이 있으며, 크로스백 끈이 리폼 전 제품은 윗부분의 양끝에 연결되어 있으나, 리폼 후 B 제품은 양쪽 옆면의 중간부분에 연결되어 있음</p> <p>[리폼 후 C 제품] 리폼 후 C 제품은 리폼 전 제품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전체 모양이 리폼 전 제품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이나, 리폼 후 C 제품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이며, 표면 질감이 리폼 전 제품은 부드럽고 약간의 신축이 있어 보이나, 리폼 후 C 제품은 뻣뻣하고 신축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상단의 여닫는 부분에 지퍼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음.</p>		
2			<p>흰색 모노그램 멀티컬러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 사용된 잠금장치 동일</p>	<p>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은 전체 모양 및 각 부분의 모양들(여닫는 부분 장식 제외)이 전부 완전히 다름. 그 중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일부분을 설명하면, <u>리폼 전 제품은 각이 없는 사다리꼴이고, 표면이 주름 잡힐 정도로 부드러우며, 위쪽 1/4 부분이 갈</u></p>	<p>갑 제 12호증의 2</p>	○

					<p>색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가죽부분 양 끝으로 관통하는 구멍(c)이 뚫려 있으며, 그 구멍으로 얇은 갈색 가죽끈이 지나가고, 아래 양 모서리 부분이 갈색 가죽(d)으로 되어 있으나, 리폼 후 제품은 네 모서리가 <u>각진 사각형 형태</u>이고, <u>표면이 주름이 전혀 없이 뽀뽀하며</u>, 위쪽 및 아래 모서리에 <u>가죽 부분도 없고 구멍도 없으며</u>, 리폼 후 제품은 리폼 전 제품에는 없는, 상단을 완전히 덮는 플랩(b)과 크로스백 끈이 있음</p> <p>리폼 전, 후 제품은 <u>가방 손잡이 형태도 완전히 다름</u></p>		
3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 가방 윗면의 여닫는 부분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음 	<p>전체 모양 : 리폼 전 제품은 역사다리꼴이 두 개 겹쳐진 것 같은 형태로 전체적으로 사각형에 가까우나, 리폼 후 제품은 동그란 원형임</p> <p>손잡이 : 리폼 전 제품은 가방 앞뒷면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2개 손잡이가 아주 길게 연결되어 있으나, 리폼 후 제품은 가방의 위쪽 둥근 면에 1개 손잡이가 매우 짧게 연결되어 있음</p> <p>리폼 후 제품은 리폼 전 제품에는 없는, 전면에</p>	<p>갑 제 12호증의 3</p>	○

					<p>원고의 저명상표가 표시된 가죽장식(a)이 큼지막하게 달려 있고, 옆면에 긴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음</p>		
4	 <p style="text-align: center;">A B</p>	 <p style="text-align: center;">B' A'</p>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 리폼 전 A, B 제품과 리폼 후 A', B' 제품은 모두 손잡이가 각 2개임 	<p>[리폼 전 A 제품과 리폼 후 A' 제품] 전체 모양 : 리폼 전 A 제품은 반원형이고, 표면이 주름이 많이 잡힐 정도로 부드러우나, 리폼 후 A' 제품은 세로가 긴 직사각형이고, 표면이 주름이 전혀 없이 뽀뽀함 윗부분 모양 : 리폼 전 A 제품은 양쪽이 아래로 처진 완만한 원형의 윗부분에 갈색 가죽 테두리(a)가 있으며, 여닫는 부분에 지퍼가 있으나, 리폼 후 A' 제품은 윗부분이 일직선이고, 위와 같은 가죽 테두리가 없으며, 여닫는 부분에 지퍼가 없고 개방되는 형태임 손잡이 : 리폼 전 A 제품은 가방 가장 윗부분(지퍼 형태로 되어 있는 여닫는 부분에 거의 맞닿아 있는 부분)에 세로로 약간 긴 타원형상의 가죽부분이 앞뒤 양쪽으로 4개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가죽끈 손잡이 2개가 금속장식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나, 리폼 후 A' 제품은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양쪽으로</p>	<p>갑 제 12호증의 4</p>	<p>리폼 후 2개 제품 모두 ○</p>

					<p>마름모꼴 형태의 가죽부분 4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가죽끈 손잡이 2개가 금속장식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면의 한쪽 위 금속장식 고리와 뒷면의 다른 쪽 위 금속장식 고리에 갈색의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음</p> <p>[리폼 전 B 제품과 리폼 후 B' 제품] 전체 모양 : 리폼 전 B 제품은 각이 지지 않은 부드러운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이고, 윗부분에 폭이 좁은 갈색 가죽 테두리가 있으며, 아랫부분에는 폭이 약간 되는 갈색 가죽 테두리(b)가 있으나, 리폼 후 B' 제품은 각이 확실한,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이고,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가죽 테두리가 없음</p> <p>손잡이 : 리폼 전 B 제품은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양쪽으로 세로로 약간 긴 타원형상의 가죽부분 4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길이가 길고 짙은 갈색의 가죽끈 손잡이 2개가 금속장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리폼 후 B' 제품은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양쪽으로 마름모꼴 형태의 가죽부분 4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p>		
--	--	--	--	--	---------------------------------------------------------------------------------------------------------------------------------------------------------------------------------------------------------------------------------------------------------------------------------------------------------------------------------------------------------------------------------------------------------------------------------------------------------------------------------------------------------------------------------------------------------------------------------------	--	--

					기에 길이가 짧고 열린 갈색의 가죽 끈 손잡이 2개가 금속장식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면의 한쪽 위 금속장식 고리와 뒷면의 다른 쪽 위 금속장식 고리에 열린 갈색의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음		
5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 가방 윗면의 여닫는 부분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음</p>	<p>리폼 전 제품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고, 앞면에 주름이 잡혀 있으며, 2개의 손잡이가 앞뒤면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장식 고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2개의 손잡이로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리폼 후 제품은 리폼 전 제품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 가방 형태로 가로가 길며, 앞쪽이 뒤쪽보다 더 높은 독특한 형상이고, 여닫는 뚜껑 부분에 짧은 손잡이가 1개 있으며, 양 옆에 허리에 착용하는 끈이 연결되어 있음 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의 각 정면 상단에 부착된 가죽장식(a, a')이 그 크기와 모양 및 색이 완전히 다르고, 리폼 후 제품의 앞면 아래쪽에는 리폼 전 제품에는 없는 고리 장식이 부착되어 있음</p>	<p>갑 제 12호증의 5</p>	○

6	 <p style="text-align: center;">A B</p>	 <p style="text-align: center;">A' B' C'</p>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 리폼 전 A 제품과 리폼 후 C' 제품 모두 상단에 연한색 가죽 테두리(a, a')가 있고, 리폼 전 B 제품과 리폼 후 A', B' 제품 모두 윗면의 여닫는부분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음 	<p>리폼 전 2개의 가방이 리폼 후 크기가 작고 모양이 전혀 다른 3개의 가방으로 되었음.</p> <p>리폼 전 2개의 제품의 원단(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어 있음)이 나뉘어서 리폼 후 3개의 제품이 되었기 때문에, 리폼 전 A, B 제품 중 어느 제품이 리폼 후 A', B', C' 제품 중 어느 제품으로 리폼되었다고 특정할 수 없어서, 리폼 후 제품들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설명함</p> <p>[리폼 후 A' 제품]</p> <p>1. 리폼 전 제품들과 다르게, 리폼 후 A' 제품은 작은 크기의 각이 둥근 직사각형 형태이고, 상단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으며, 정면에 빨간색 수술장식이 달려 있고, 윗면에 짧은 손잡이가 1개만 있고, 크로스백 끈이 있음.</p> <p>[리폼 후 B' 제품]</p> <p>리폼 전 제품들과 다르게, 리폼 후 B' 제품은 크기가 작고 모양이 원형이며, 가방 위 둥근 면에 짧은 손잡이 1개만 있고, 옆면에 긴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으며, 전면에 원고의 저명상표가 표시된 가죽장식(b)이 있음</p>	<p>갑 제 12호증의 6</p>	<p>리폼 후 3개 제품 모두 ○</p>
---	-----------------------------------------------------------------------------------------------------------------------------------------------	--------------------------------------------------------------------------------------------------------------------------------------------------------------------------	------------------------------	----------------------------------------------------------------------------------------------------------------------------------------------------------------------------------------------	---------------------------------------------------------------------------------------------------------------------------------------------------------------------------------------------------------------------------------------------------------------------------------------------------------------------------------------------------------------------------------------------------------------------------------------------------------------------------------------------------------------------------------------------------------	--------------------	------------------------

					<p>[리폼 후 C' 제품] 리폼 전 제품들과 다르게, 리폼 후 C' 제품은 전체적으로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이고, 상단에 4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 사이로 끈을 통과시켜 여밀 수 있도록 하여 여닫는 기능을 하도록 하며, 양쪽 옆면에 긴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음</p>		
7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1.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 모두 여닫는 부분이 (지퍼 없이) 개방된 형태임</p>	<p>리폼 전 제품은, 앞뒷면은 각이 거의 없는 사다리꼴 형태이고 옆면은 긴 삼각형 형태로서, 가방 윗부분은 좁고 아랫부분은 넓으며, 가방 가장 윗부분 양쪽 끝에 있는 구멍(b)에 1개의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으나, 리폼 후 제품은, 앞뒷면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고 옆면은 세로가 긴 직사각형 형태로서 가방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폭이 같고,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양쪽으로 세로로 긴 타원 형태의 가죽부분 4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가죽끈 손잡이 2개가 금속장식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리폼 전 제품에 있는 구멍(b)은 없음), 가방 가장 윗부분 4모서리에, 리폼 전 제품에는 없는 가죽장식(a)이 있음</p>	<p>갑 제 12호증의 7</p>	○

8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리폼 전 제품의 완전한 형상을 파악하기 어려우</p>  <p>나,  에 의해 형상을 추정하여 비교함</p> <p>리폼 전 제품은, 앞뒷면이 사다리꼴 형태이고, 앞뒷면 가장 윗부분 양쪽에 있는 쇠고리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으나,</p> <p>리폼 후 제품은, 앞뒷면이 정사각형 형태로서 리폼 전 제품보다 크기가 많이 작아졌고, 손잡이가 앞뒷면 위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온 부분에 아무런 매개체 없이 직접 부착되어 있으며, 여닫는 부분이 양 옆면 거의 아래까지 내려오고, 리폼 전 제품에는 없는 크로스백 끈이 있음</p>	<p>갑 제 12호증의 8</p>	○
9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 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 모두 크로스백 끈이 있음.</p>	<p>리폼 전 제품은, 앞뒷면이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이고, 윗부분에 폭이 약간 되는 자주색 가죽이 길게 부착되어 있으며, 앞면 위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온 부분에 양쪽으로 부착되어 있는 금속장식에 2개의 가죽끈 손잡이가 있고, 가방 가장 윗부분 양쪽 끝에 있는 구멍에 금속장식으로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으나,</p> <p>리폼 후 제품은, 리폼 전 제품보다 크기가 훨씬 작</p>	<p>갑 제 12호증의 9</p>	○

					<p>고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이며, (리폼 전 제품에는 없는) 앞뒷면 가운데에 위아래로 긴 가죽장식이 있고 그 중간에 쇠로 만든 체결구 장식이 있으며, (리폼 전 제품에는 없는) 앞뒷면 4모퉁이에 넓은 가죽장식이 붙어 있고, 가방 윗면의 양쪽에 서 있는 금속장식에 매우 두꺼운 손잡이 1개가 연결되어 있음.</p>		
10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1.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리폼 전 B 제품이 리폼 후 A' 제품으로 리폼되었다면) 리폼 전 B 제품과 리폼 후 A' 제품은 윗부분 모서리의 둥근 형태가 유사하고, 모두 윗면의 여닫는 부분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음.</p>	<p>리폼 전 A, B 제품 중 어느 제품이 리폼 후 A', B' 제품 중 어느 제품으로 리폼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리폼 후 A', B' 제품을 리폼 전 제품들 모두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명함</p> <p>[리폼 후 A' 제품] 리폼 후 A' 제품을 리폼 전 A 제품과 비교하면, 가방 형상이 완전히 다르고, 손잡이 색상과 연결 위치 및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리폼 전 A 제품에는 윗부분에 넓은 폭으로 다른 색상의 가죽부분 (a)이 있음에 반해, 리폼 후 A' 제품에는 이와 다르게 아랫부분에 넓은 폭의 다른 색상의 가죽 테두리가 있으며, 리폼 후 A' 제품에는 리폼 전 A 제품 윗부분에 있는 플랩 (b)이 없고, 리폼 전 A 제품에는 없는 크로스백 끈</p>	<p>갑 제 12호증의 10</p>	○

					<p>이 있음 리폼 후 A' 제품을 리폼 전 B 제품과 비교하면, 손잡이의 색상 및 연결방식이 다르고, 리폼 후 A' 제품에는, 리폼 전 B 제품 앞면에 있는 주머니와 그 상단의 가죽테두리(c), 앞면 윗부분 손잡이 연결 부위에 있는 가죽장식(d), 옆면의 자물쇠 장식이 없고, 리폼 전 B 제품에는 없는, 아랫부분의 넓은 폭의 다른 색상의 가죽테두리와 크로스백 끈이 있음</p> <p>[리폼 후 B' 제품] 리폼 후 B' 제품을 리폼 전 A 제품과 비교하면, 가방 형상이 완전히 다르고, 손잡이 색상과 연결 위치 및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리폼 전 A 제품은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원단 부분이 주름이 잡히나, 리폼 후 B' 제품은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원단 부분에 주름이 전혀 없고, 리폼 후 B' 제품에는 리폼 전 A 제품 윗부분에 넓은 폭으로 있는 다른 색상의 가죽부분(a)과 플랩(b)이 없으며, 리폼 전 A 제품에는 없는 크로스백 끈이 있음</p> <p>리폼 후 B' 제품을 리폼 전 B 제품과 비교하면, 가방 형상이 완전히 다르</p>	
--	--	--	--	--	------------------------------------------------------------------------------------------------------------------------------------------------------------------------------------------------------------------------------------------------------------------------------------------------------------------------------------------------------------------------------------------------------------------------------------------------------------------------------------------------------------------------------------------------------------------------	--

					고, 손잡이 색상과 연결 위치 및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리폼 후 B' 제품에는, 리폼 전 B 제품 앞면에 있는 주머니와 그 상단의 가죽테두리(c), 앞면 윗부분 손잡이 연결부위에 있는 가죽장식(d), 옆면의 자물쇠 장식이 없고, 리폼 전 B 제품에는 없는 크로스백 끈이 있음		
11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1.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리폼 전 A, B 제품과 리폼 후 B' 제품은 모두 윗면의 여닫는 부분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음</p>	<p>리폼 전 A, B 제품은 거의 동일한 제품이고 낡은 정도만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리폼 전 A, B 제품을 함께(이하에서는 '리폼 전 제품'이라고 한다) 리폼 후 A'제품 및 리폼 후 B' 제품과 비교함</p> <p><u>리폼 전 제품</u>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보스톤백 형태이며, 가방 전체의 폭이 상당히 넓고 신축성이 있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별 차이가 없으며, 양 옆면 가장자리에 가늘게 엮은 색상의 가죽테두리가 있으며,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양쪽으로 마름모꼴 형태의 가죽부분 4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갈색의 가죽끈 손잡이 2개가 금속장식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의 여닫는 부분은 지퍼로 되어 있고 그 양끝(한쪽 끝)에 가죽장식이 부착되어 있으나,</p>	<p>갑 제 12호증의 11</p>	○

					<p>리폼 후 A' 제품은, 세로로 긴 사다리꼴 형태이고,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폭이 넓으며, 위의 여닫는 부분에 지퍼 없이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있는 구멍에 끈을 통과시켜 여미는 형태이고, 1개의 검은색 손잡이가 양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장식에 연결되어 있으며, 리폼 전 제품의 옆면의 가죽 테두리와 위쪽의 여닫는 부분 지퍼 양끝(또는 한쪽 끝)에 있는 가죽장식은 없음</p> <p>리폼 후 B' 제품은, 리폼 전 제품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4모서리가 둥근 핸드백 형태이며, 윗면 및 옆면이 앞뒷면과는 다르게 검은색 가죽이며, 앞면 중앙에서 약간 윗부분에 고리가 있는 금속장식이 부착되어 있고, 그 고리에 수술장식이 연결되어 있으며, 윗면 뒤쪽에 아주 짧은 검은색 손잡이가 가죽고리에 연결되어 있고, 양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검은색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으며, 리폼 전 제품의 옆면의 가죽 테두리와 위쪽의 여닫는 부분 지퍼 양끝(또는 한쪽 끝)에 있는 가죽장식은 없음</p>	
--	--	--	--	--	----------------------------------------------------------------------------------------------------------------------------------------------------------------------------------------------------------------------------------------------------------------------------------------------------------------------------------------------------------------------------------------------------------------------------------------------------------------------------------------------------------------------------------------------	--

12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

루이비통 원단을이
용한 패션 소품

리폼 전 제품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보스톤백 형태이며, 가방 전체의 폭이 상당히 넓고 신축성이 있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별 차이가 없으며, 앞뒷면과 양 옆면이 동일한 원단이며, 다만 양 옆면 가장자리에 가늘게 열은 색상의 가죽 테두리가 있으며,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양쪽으로 마름모꼴 형태의 가죽부분 4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갈색의 가죽끈 손잡이 2개가 금속장식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의 여단은 부분은 지퍼로 되어 있고 그 한쪽 끝에 자물쇠 장식이 부착되어 있으나,

리폼 후 제품은, 핸드백 형태로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넓고, 앞뒷면은 리폼 전 제품의 원단과 같은 원단이나 양 옆면 및 아랫면 중간부분은 보다 연한색(연한 베이지색)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 두 가지 색상이 명확히 대비되며, 윗면과 앞면 반 이상을 덮으면서 끝부분이 삼각형인 덮개가 있고, 이 덮개의 삼각형 부분 중앙에 있는 금속(또는 자석)과 가방 앞면 중앙에 있는 자석(또는 금속)의 자력에 의해 덮개를 여닫으며(가방을 여닫

갑 제
12호증
의 12

○

					<p>는 방식이 리폼 전 제품과는 완전히 다름), 손잡이는 없고 가방 윗면 양쪽에 있는 고리에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으며, 리폼 전 제품에 있는 윗면의 지퍼와 옆면의 가죽 테두리 및 자물쇠 장식은 없음</p>		
13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 가방 윗면의 여닫는 부분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음</p>	<p>리폼 전 제품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보스톤백 형태이며, 가방 전체의 폭이 상당히 넓고 신축성이 있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별 차이가 없으며, 앞뒷면과 양 옆면이 동일한 원단이며, 다만 양 옆면 가장자리에 가늘게 열은 색상의 가죽 테두리가 있으며,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양쪽으로 마름모꼴 형태의 가죽부분 4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갈색의 가죽끈 손잡이 2개가 금속장식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 리폼 후 제품은, 약한 역사다리꼴의 핸드백 형태이고, 앞뒷면은 리폼 전 제품의 원단과 같은 원단이나 윗면과 아랫면 및 양 옆면은 짙은 분홍색 가죽으로 되어 있어 두 가지 색상이 명확히 대비되며, 앞면 중앙 약간 위쪽에 고리가 있는 마름모꼴의 금속장식이 부착되어 있고, 그 고리에 수술장식이 연결되어 있으며,</p>	<p>갑 제 12호증의 13</p>	<p>○</p>

					<p>윗면 뒤쪽에 아주 짧은 분홍색 손잡이 1개가 분홍색 가죽고리에 연결되어 있고, 양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얇은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분홍색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음.</p>		
14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1.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2.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은 전체적인 사각형 형태가 유사하고, 크로스백 끈이 있음.</p>	<p>리폼 후 제품에는 리폼 전 제품의 상단에 있는 가죽 테두리(a)가 없으며, 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은, 손잡이가 부착된 위치와 형상이 다르고(리폼 전 제품은 상단의 가죽 테두리의 구멍에 연결된 금속고리에 부착되어 있으나, 리폼 후 제품은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 양쪽에 뚫린 구멍에 금속단추로 부착되어 있음) 손잡이의 형태도 다르며, 크로스백 끈의 부착 위치도 다름</p>	<p>갑 제 12호증의 14</p>	○
15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1.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2.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은 전체적인 사각형 형태가 유사하고, 여닫는 부분이 (지퍼 없이) 개방된 형태임</p>	<p>리폼 전 제품이 리폼 후 제품보다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더 있고, 리폼 전 제품은, 가방 윗부분 양쪽 끝에 있는 금속원형 장식이 끼워진 구멍(a)에 금속고리로 연결된 1개의 손잡이가 있으나, 리폼 후 제품은,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 양쪽에 뚫린 4개의 구멍(b)에 손잡이 2개의 양끝이 금속단추로 연결되어 있고, 리폼 전 제품에 있는, 금속원형 장</p>	<p>갑 제 12호증의 15</p>	○

					<p>식이 끼워진 구멍(a)은 없음</p>		
16			<p>검정 모노그램 앙프랑뜨 원단의 가방</p>	<p>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2. 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은 여닫는 부분에 지퍼가없음</p>	<p>리폼 전 제품은 가로가 약간 긴 직사각형 형태이나, 리폼 후 제품은 세로가 약간 긴 직사각형 형태임</p> <p>리폼 전 제품은, 가방 윗부분 양쪽 끝에 있는 금속원형 장식이 끼워진 구멍에 커다란 금속고리로 연결한 두툼하고 길이가 짧은 1개의 손잡이가 있으나,</p> <p>리폼 후 제품은, 가방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 중앙에 가까운 쪽에 있는, 금속원형 장식이 끼워진 4개의 구멍에 상단을 여밀 수 있도록 끈(a)이 관통하고 있고, 가방 양 옆면의 금속 장식에 고리로 연결된 길이가 상당히 길고 얇은 끈(어깨에 타이트하게 뻗 수 있는 끈)1개가 있음</p>	<p>갑 제 12호증의 16</p>	○
17			<p>검정 모노그램 멀티컬러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리폼 전 제품은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순번 2의 리폼 전 제품과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원단의 색상만 다르고 같은 형태인 것으로 짐작됨</p> <p>리폼 전 제품은, 각이 없는 사다리꼴이고, 표면이 주름 잡힐 정도로 부드러우며, 위쪽 1/4 부분이 갈색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가죽부분 양 끝으로 관통하는 구멍(b)이 뚫려 있으나,</p>	<p>갑 제 12호증의 17</p>	○

					<p>리폼 후 제품은 리폼 전 제품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직사각형 모양이며, 상단을 완전히 덮는 플랩 (a)과 윗부분 양쪽 끝의 2개의 금속장식에 연결된 1개의 크로스백 끈이 있고, 앞뒷면은 리폼 전 제품의 원단과 같은 원단이나 양 옆면은 리폼 전 제품과는 다른 원단으로 되어 있고, 리폼 전 제품과 다르게 갈색 가죽 부분이 나 관통하는 구멍은 없음</p>		
18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2. 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은 모두상단에 연한 색의 가죽 테두리(a, a')가 있음</p>	<p>리폼 전 제품은 가로가 약간 긴 직사각형 형태이나, 리폼 후 제품은 세로가 긴 향아리(주머니) 형태임</p> <p>리폼 전 제품은, 앞면과 옆면의 경계에 연한 베이지색의 테두리가 있고, 여닫는 부분이 지퍼 형태이며, 앞면 하단 양 모서리에 큰 크기의 가죽장식 (b)이 있으며, 옆면 윗부분 양끝에 있는 금속고리에 연결된 길이가 긴 끈 뿐만 아니라,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양쪽으로 가죽부분 4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베이지색의 가죽 끈 손잡이 2개가 금속장식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나,</p> <p>리폼 후 제품은, 여닫는 부분이 지퍼 대신 상단 구멍으로 끈을 통과시켜 여미는 형태이면서, 그</p>	<p>갑 제 12호증의 18</p>	○

					끈이 길어서 리본 모양으로 묶여 있고, 옆면 윗부분 양끝에 있는 금속고리에 연결된 길이가 긴 끈 이외에 손잡이는 하나도 없으며, 리폼 전 제품에 있는 하단 양 모서리 가죽장식(b)이 없음		
19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p>리폼 전 제품은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에 의하면, 전체 모양이 사다리꼴 형태이고, 가방 가장 윗부분 양쪽 끝에 각 원단과 다른 가죽부분이 있고, 여기에 있는 구멍에 길이 조절이 가능한 1개의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p> <p>그러나 리폼 후 제품은, 모양이 둥근 원형으로 리폼 전 제품과는 완전히 다르고, 앞면에 직사각형의 금속장식이 부착되어 있으며, 윗부분에서 옆면 중간까지 내려오는 지퍼가 있고, 손잡이는 없으며 양 옆면의 가죽장식에 금속고리로 연결된 크로스백 끈이 있을 뿐임</p>	갑 제 12호증의 19	○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

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 리폼 전 B 제품과 리폼 후 B' 제품은 여닫는 부분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음

※리폼 전 A 제품과 리폼 후 A' 제품에는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단 이 표에서는 비교하지 않고, 리폼 전 B 제품과 리폼 후 B' 제품만 차이점을 설명함

리폼 전 B 제품은, 세로가 길고 모서리가 둥근 사다리꼴이며, 앞면 상단에 a와 같은 베이지색 가죽 테두리가 있고, 앞면과 옆면 및 아랫면 경계에 가는 베이지색 가죽 테두리가 있으며, b와 같은 앞주머니가 있고, 손잡이는 없으며, 옆면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고리에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으나, 리폼 후 B' 제품은, 가로가 길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이고, 정면에 있는 마름모꼴의 가죽 장식에 수술장식이 부착되어 있으며, 윗면 뒤쪽에 아주 짧은 검은색 손잡이 1개가 가죽고리에 연결되어 있고, 양 옆면 중간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검은색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으며, 리폼 전 B 제품에 있는 a의 가죽 테두리와 b의 앞주머니는 없음

갑 제 12호증의 20

○

21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리폼 전 제품은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에 의하면, 가로가 길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로서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넓은 형태이며, 앞면 가장 윗부분과 위에서부터 3/4 부분에 본체 원단보다 연한 갈색의 가죽 테두리(띠)가 있으나,

리폼 후 제품은, 직사각형 형태이기는 하나,



에서 원단을 오려내어 제작할 정도로 리폼 전 제품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앞면과 옆면 및 위아랫면의 경계에 검은색 가죽 테두리가 있으며, 앞면에 지퍼가 달린 주머니가 있고, 앞면 중간에는 아무런 가죽 띠가 없음

갑 제 12호증의 21

○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
검정 모노그램 앙프랑뜨 소재 원단의 가방

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

2. 리폼 전 A, B 제품과 리폼 후 A', B' 제품은 모두 손잡이가 1개임

리폼 전 A, B 제품은 원단의 색상 및 질감만 다를 뿐 디자인은 동일한 제품이고, 리폼 전 A', B' 제품도 위 각 색상과 질감이 다른 원단으로 서로 디자인이 동일한 제품이 제조된 것이므로, 리폼 전 A, B 제품을 리폼 후 A', B' 제품과 함께 비교함

리폼 전 A, B 제품은, 가로가 약간 긴 직사각형 형태이고, 가방 윗부분 양쪽 끝에 있는 금속원형 장식이 끼워진 구멍(c)에 커다란 금속고리로 연결한 두툼하고 바느질 자국이 있으며 길이가 짧은 1개의 손잡이가 있으나, 리폼 후 A', B' 제품은, 세로가 긴 향아리(주머니) 형태이고, 위에서 1/3 부분에 원단과 다른 색상이고 폭이 넓은 가죽 띠(a)가 가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가방 상단을 여밀 수 있도록 하며, 양 옆면에 원단과 다른 색상(위 가죽 띠와 같은 색상)의 폭이 좁은 가죽 띠가 있고, 이 가죽 띠가 연장되어 서로 만나 손잡이 역할을 하며, 그 손잡이 중간부분에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버클(b)이 있으며, 양 옆면의 위 가방을 둘러싸고 있는 가죽 띠(a) 부분에 있는 금속 고리장식에 크로스백 끈이 연결

갑 제 12호증의 22

					<p>되어 있고, 리폼 전 제품에 있는, 손잡이를 연결하는 금속원형 장식이 끼워진 구멍(c)은 없음</p>		
23		 <p>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1.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2.리폼 전 제품과 리폼 후 제품은 모두정면에 모양이 유사하고 지퍼가 있는 주머니가 2개 있음.</p>	<p>리폼 전 제품은 세로가 긴 직사각형 형태의 백팩이고, 리폼 후 제품은 가로가 긴 직사각형 형태이고, 손으로 들거나 크로스백 끈으로 어깨에 메는 가방임</p> <p>리폼 전 제품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베이지색 가죽 띠가 있고, 앞뒷면 상단에 각 6개씩의 구멍을 뚫어 이 구멍들로 얇은 베이지색 가죽끈이 통과되도록 하여 가방 상단을 여밀 수 있도록 하며, 윗면의 반 정도를 덮는 플랩이 있으며, 별도의 손잡이가 없고, 앞면 중앙에 버클에 가죽부분이 연결된 장식이 있으나,</p> <p>리폼 후 제품은, 가방 앞면 한중간에 중간폭의 베이지색 가죽 띠가 있고, 앞면과 옆면 및 위아랫면 경계에 가는 베이지색 가죽띠가 둘러져 있으며, 가방 윗부분에서부터 양 옆면 중간부분까지 여닫는 부분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고(윗면을 덮는 플랩이 있을 여지가 없음), 윗면 뒤쪽에 짧은 베이지색 손잡이가 가죽고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양 옆면 중간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베이지</p>	<p>갑 제 12호증의 23</p>	○

					<p>색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음</p>		
<p>24</p>			<p>흰색 모노그램 멀티컬러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 와인색 모노그램 베르니 소재 가방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 원단의 가방</p> <p>리폼 전 A제품과 리폼 후 A'제품 모두 여닫는 부분에 지퍼가 있음.</p>	<p>1.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2. 리폼 전 A 제품과 리폼 후 A' 제품은 전체적으로 두툽한 직사각형 형태로 유사하고, 여닫는 부분에 지퍼가 있음</p>	<p>[리폼 전 A 제품과 리폼 후 A' 제품] 리폼 전 A 제품은, 앞뒷면과 위아랫면 및 옆면이 모두 같은 원단(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어 있는 원단)이고,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양쪽으로 가죽부분 4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가죽끈 손잡이 2개가 금속장식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나, 리폼 후 A' 제품은, 앞뒷면은 리폼 전 A 제품과 같은 원단이나, 위아랫면과 옆면은 베이지색 원단이고, 윗면 한쪽에 아주 짧은 베이지색 손잡이 1개가 가죽고리에 연결되어 있고, 양 옆면 중간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베이지색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음</p> <p>[리폼 전 B 제품과 리폼 후 B' 제품] 리폼 전 B 제품은, 앞뒷면은 직사각형 형태이나 옆면은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은 삼각형 형태이고, 앞뒷면 윗부분에 각 베이지색 가죽 띠가 있으면서 그 중간 가죽 띠 부분이 옆으로 긴 타원형으로 벌어져 손잡이 2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각 가죽 띠</p>	<p>갑 제 12호증의 24</p>	<p>○</p>

					<p>중간중간에 4개의 금속단 추장식이 있어서 상단부분을 여미는 역할을 하고, 그 가죽 띠 중간에 연결된 가죽장식에 금속 고리로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으나,</p> <p>리폼 전 B' 제품은, 옆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폭이 같고 앞뒷면 모서리가 둥근 직육면체 형태이며, 앞뒷면은 리폼 전 B 제품과 같은 원단이나 위아랫면과 옆면은 베이지색 원단이고, 윗면에서부터 양 옆면 중간까지 여닫는 부분에 지퍼가 있으며, 윗면 한쪽에 아주 짧은 베이지색 손잡이 1개가 가죽고리에 연결되어 있고, 양 옆면 중간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베이지색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음</p> <p>[리폼 전 C 제품과 리폼 후 C' 제품]</p> <p>리폼 전 C 제품은, 앞뒷면 및 옆면이 모두 세로로 약간 긴 사다리꼴 형태이고, 앞뒷면의 윗부분과 양 옆면의 윗부분을 한바퀴 둘러 베이지색의 가죽 띠가 있으며, 윗부분을 닫을 수 있는 끈이나 지퍼가 없고, 양 옆면에 베이지색 띠가 체결되어 있으며, 앞뒷면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양쪽으로 가죽부</p>	
--	--	--	--	--	------------------------------------------------------------------------------------------------------------------------------------------------------------------------------------------------------------------------------------------------------------------------------------------------------------------------------------------------------------------------------------------------------------------------------------------------------------------------------------------------------------------------------------------------------------------------	--

					<p>분 4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베이지색의 가죽 끈 손잡이 2개가 금속장식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나,</p> <p>리폼 전 C' 제품은, 가로가 길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이고, 정면에 있는 마름모꼴의 가죽장식에 수술장식이 부착되어 있으며, 윗면에서부터 양 옆면 중간까지 여닫는 부분에 지퍼가 있고, 윗면 뒤쪽에 아주 짧은 검은색 손잡이 1개가 가죽고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양 옆면 중간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검은색 크로스백 끈이 연결되어 있음</p>		
--	--	--	--	--	------------------------------------------------------------------------------------------------------------------------------------------------------------------------------------------------------------------------------------------------------------------------------	--	--

별첨 4[별지 8]: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차이점 등 분석 2

순번	리폼 전 사진	리폼 후 사진	동일한 점	유사한 점	차이점	증거	동일성을 해할 정도 여부
1			<p>모노그램 캔버스 소재 원단의 패션소품</p>	<p>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리폼 전 제품과 비교하여, 리폼 후 제품들은 가방이 아닌 지갑이어서 그 형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용도도 다르며, 크기가 작고 얇으며, 손잡이가 없음. 특히 리폼 후 A 제품은 리폼 전 제품과 달리 여닫는 부분에 지퍼가 있음.</p>	<p>갑 제 13호증의 1</p>	<p>리폼 후 제품들 모두 ○ (동일성을 해할 정도임, 이하 ○는 같은 의미임)</p>
2			<p>모노그램 캔버스 소재 원단의 패션소품</p>	<p>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리폼 전 제품과 비교하여, 리폼 후 제품들은 가방이 아닌 지갑이어서 그 형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용도도 다르며, 크기가 작고 얇으며, 손잡이가 없음</p>	<p>갑 제 13호증의 2</p>	<p>리폼 후 제품들 모두 ○</p>

3			<p>모노그램 캔버스 소재 원단의 패션소품</p>	<p>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리폼 전 제품과 비교하여, 리폼 후 제품들은 가방이 아닌 지갑이어서 그 형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용도도 다르며, 크기가 작고 얇으며, 손잡이가 없음</p>	<p>갑 제 13호증의 3</p>	<p>리폼 후 제품들 모두 ○</p>
4			<p>모노그램 캔버스 소재 원단의 패션소품</p>	<p>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리폼 전 제품과 비교하여, 리폼 후 제품들은 가방이 아닌 지갑 또는 태블릿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이어서 그 형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용도도 다르며, 크기가 작고 얇으며, 손잡이가 없음</p>	<p>갑 제 13호증의 4</p>	<p>리폼 후 제품들 모두 ○</p>
5			<p>모노그램 캔버스 소재 원단의 패션소품</p>	<p>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한 패션 소품</p>	<p>리폼 전 제품(리폼 전 사진 란 중 가운데 윗부분만이 리폼 전 제품을 사용하여 리폼 후 제품을 만들고 남은 부분이고, 리폼 전 사진 란 중 왼쪽, 가운데 아랫부분, 오른쪽은 리폼 후 제품임)과 비교하여, 리폼 후 제</p>	<p>갑 제 13호증의 5</p>	<p>리폼 후 제품들 모두 ○</p>

					폼들은 가방이 아닌 지갑 이어서 그 형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용도도 다 르며, 크기가 작고 얇으 며, 손잡이가 없음		
--	--	--	--	--	-------------------------------------------------------------------------------	--	--